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683호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설치)” 를 “(어린이집의 설치)” 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로, “발생한 때에는” 을 “발생하거나 기타 공익상 부적합할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을 “(비용의 보조)”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규정” 을 “관련법령” 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보조금의 반환명령)” 을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을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로, “어린이집” 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 으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삭 제>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삭 제>

5. 기타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계규정에 의거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보조) -----
-- 관련법령-----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09.30., 개정 2012.10.02.>>

제2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 <후단 삭제>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삭 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삭 제>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삭 제>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684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장난감도서관 등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제3장의 제목 “장난감도서관” 을 “장난감도서관 등”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및 영유아 도서대여실” 을 “등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료를” 을 “자료 및 놀이 공간 이용시” 로 한다.

제11조 중 “3년” 을 “5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생 략)</p> <p>②센터의 장은 시행령 제15조제 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보육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p> <p>③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p> <p><삭 제></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생 략)</p> <p>2. <u>장난감도서관 및 영유아 도서대여실 운영</u></p> <p>3. ~ 9. (생 략)</p> <p>제3장 <u>장난감도서관</u></p>	<p>제4조(기능)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장난감도서관 등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u></p> <p>3. ~ 9. (현행과 같음)</p> <p>제3장 <u>장난감도서관 등</u></p>
<p>제8조(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① 장난감도서관 및 영유아 도서대여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산시 거주자로 하며, 회원으로 등록</p>	<p>제8조(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①----- 등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p>

하여야 한다.

②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회원이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장난감도서관은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의 내구연한을 관리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난감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훼손, 멸실의 경우 회원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③·④ (생략)

제1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

②-- 자료 및 놀이공간 이용시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위탁기간) ----- 5년 -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685호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5명 이내, 일반분야는 10명 이내”를 “20명 내외, 일반
분야는 20명 내외”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전문분야는 <u>15명 이내</u>, 일반분야는 <u>10명 이내</u> 인력풀을 구성하고 주요현안 감사대상의 분야에 따라 10명 이내로 편성하여 운영한다.</p>	<p>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20명 내외</u>, 일반분야는 <u>20명 내외</u> ----- ----- -----.</p>
<p>제3조(자격) ①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가. <u>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단, 군산시 퇴직자는 제외)</u> 나.·다. (생략)</p> <p>②·③ (생략)</p>	<p>제3조(자격)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삭제></p> <p>나.·다.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686호

군산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시민의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시민의날조례**”를 “**군산시민의 날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郷심을 고취시켜,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군산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 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 하고 군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 행사
3. 시민 체육행사
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정지원) ①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사에 참가하여 입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상 및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산시민의 날 기념 문화예술 행사 및 시민 체육행사
 입상 단체 및 개인 상금 지급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구 분	상금 지급 조건	상금 지급 기준
문화 예술행사 시민 체육행사	1. 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2. 시민 체육행사에 참가하여 종목별 입상 및 종합 순위에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 1팀(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입상 성적별 차등 지급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군산시시민의날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군산시민의 날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하며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일자) 매년 10월 1일을 군산시민의 날로 한다.</u></p>	<p><u>제2조(시민의 날) 군산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u></p>
<p><u>제3조(축제행사) ①시민의 날 축제행사는 매년 10월 1일 거행한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u> <u>②시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례행사</u> <u>2. 경축식전행사</u> <u>3. 시민의장포상</u> <u>4. 진포대접제</u> <u>5. 민속예술행사</u> <u>6. 체육행사</u> <u>7. 학술행사</u> <u>8. 기타 축제행사</u> 	<p><u>제3조(기념행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시민의 날 기념행사</u> <u>2. 문화·예술 행사</u> <u>3. 시민 체육행사</u> <u>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u>
<p><u><신 설></u></p>	<p><u>제4조(재정지원) ①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u> <u>②시장은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사에 참가하여 입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상 및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4조 ~ 제9조 (생략)</u></p>	<p><u>제5조 ~ 제10조 (현행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u></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687호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688호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 출연)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의 일반 회계 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출연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20퍼센트 초과한 경우: 경상일반재원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으로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1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기금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자치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3. 기금출납원: 예산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689호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상법』 에 따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설립 및 명칭) 군산시(이하“시”라 한다)는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그 명칭은“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 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4. 본점 소재지
5. 회사의 공고 방법
6.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회사의 정관 작성, 변경시 시와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자본금 및 출자 등)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으며, 시의 출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6조(주요업무와 사업) 회사의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효율적, 단계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새만금 부지 내 육상·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2. 주차장 등 시 공공 유희부지 활용 발전사업
3. 해상풍력 발전사업
4.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및 수익금 배분사업
5. 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사업
6. 그 밖의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

제7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시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시민복리증진, 지역개발,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① 시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있어 회사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회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제11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회사를 감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각 항에 따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상법』 , 『지방재정법』 ,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690호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11.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주요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거나 전환(“인증” 등을 포함한다.)을 목표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 제2항 중 “민·관협의체”를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로 한다.

제5조의2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행사의 전문성을”을 “전문성을”으로, “제2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조제3호에 따른”을 “제3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② 시장은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중 제3항의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13조 중 제3항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10.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설립 지원

제23조 중 제2항 중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0. (생략)</p> <p><신 설></p> <p>제4조(책무) ① (생략)</p> <p>② 시장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u>“민·관협의체”</u>를 구축하여 ----- ----- --.</p> <p>③~⑥ (생략)</p>	<p>제3조(정의)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주요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거나 전환(“인증”등을 포함한다.)을 목표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p> <p>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u>“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u>를 구축하여 ----- -----.</p> <p>③~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육성지원) ① (생략)</p> <p><신 설></p>	<p>제5조의2(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육성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1. ~ 5. (생략)</p>
<p>③ 시장은 <u>행사의 전문성을</u> 제고하기 위하여 <u>제2항</u>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u>제3조제3호에</u>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u>전문성을</u> 제고하기 위하여 <u>제3항</u>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u>제3조제5호에</u>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3조(설치·업무) ①~② (생략)</p>	<p>제13조(설치·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 9. (생략)</p>	<p>1. ~ 9.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10.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설립 지원</p>
<p>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생태계조성에 필요한 사항</p>	<p>11.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생태계조성에 필요한 사항</p>
<p>제23조(민·관협치체계) ① (생략)</p>	<p>제23조(민·관협치체계)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u>사회적경제 협의체</u>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u>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u>”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691호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산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관련 상황전파 및 폭염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에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 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 집·내 점포 앞 물뿌리기, 전자제품 사용자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는 폭염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폭염예방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장은 폭염예방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는 매년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 저감조치 운영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폭염예방 종합계획을 폭염대응 협업부서 및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①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10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폭염대비 용품 등

4. 온열질환의료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더위쉼터 지원) ①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폭염에 따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야간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더위쉼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 제6호의 생활관리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고정형 그늘막시설,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민제안 등) ① 시장은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 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 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 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발생요인

군산시 폭염피해 예방사업 사업 지원

○ 관련조문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안 제9조 무더위쉼터 지원
- 안 제11조 폭염저감시설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추계시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계를 실시하고, 연도별 무더위쉼터 등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추계를 산정함.

나. 비용추계 결과

- 2019년도에 150백만원(도비, 기금)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은 2020년 예산 편성 기준 5년간 750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다. 재원조달방안

- 특별교부세(도비) 및 시 자체제원(기금) 지방세 수입

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3.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연락처	(063) 454 - 38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세출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무더위쉼터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얼음비치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자동살수시스템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고정형그늘막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 조달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의존 재원	소 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보조금						
	특별교부세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자체 수입	소 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지방세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세외수입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692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림축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및 전라북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2.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란 군산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3.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 조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일련의 지역농업 재편사업
2.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지역가공 활성화사업
3.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기업급식 등 확대를 위한 제 사업
4.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5. 생산·유통·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6. 군산시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 농업인·소비자 교육·연구·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8. 농업·농촌 관련 정보제공, 체험·관광사업의 연계를 위한 농촌정보센터 운영
9.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0.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1. 인근 지역과 연계한 제휴 푸드 사업
12. 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2명)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센터장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집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③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사회에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경영실적 평가) ①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센터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보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제3장 먹거리 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25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에게 안전하고·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림축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군산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27조에 따른 군산시먹거리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제26조(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 할 수 있다.

③ 시와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군산시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단의 운영 등을 위해 군산시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푸드 플랜)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4. 군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먹거리 관련 업무담당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4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693호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
 -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
2.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대기오염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일때 이를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대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계획
4.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계획
5.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
6. 저감대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자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저감대책은 환경부, 전라북도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대기측정망 등 설치·운영)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 및 다중이용공공시설(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도서관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 공기질(미세먼지) 상시측정 통합관제시스템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과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업비 및 물품(공기청정기, 공기정화장치, 방진망 등) 지원
2. 노후 경유차 폐차 보상금 지원
3.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4.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장은 전라북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은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9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① 도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시장은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 그 상황과 행동요령을 전광판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의 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선정에 자에게는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선정된 정책에 대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694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3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지체없이”를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40조 중 “군산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표 1 가스·전기레인지의 가격 (원)란 식탁의 6인용 미만의 가격 (원)란 식탁의 6인용 미만의 가격 (원)란에 폐소화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폐 소 화 기	모 든 규 격	3,500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u>30일</u>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지체없이</u>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 ---- <u>60일</u> 이내----- -----.</p> <p>②----- ----- ----- 때 에는 <u>14일</u>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 ----- ----- ----- -----.</p>
<p>제4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u>군산시시세부과징수규칙</u>을 준용한다.</p>	<p>제40조(준용규정) ----- ----- ----- 「<u>질서위반행위규제법</u>」-----.</p>
<p>[별표 1] <u>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u></p>	<p>[별표 1] <u>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u></p>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신 발 장	모 든 규 격	2,500
싱 크 대	대 형	4,500
	소 형	2,500
오 락 기 기	대 형	6,500
	소 형	3,500
은 풍 기	대 형	12,500
	소 형	10,000
욕 조	개 당	4,500
유 모 차	개 당	2,500
의류(이불 등)	마 대 당	2,500
의 자	대 형	3,500
	중 형	2,500
	소 형	1,500
장 룡	120cm 장1쪽	18,000
	90cm 장1쪽	12,500
장 식 대	모 든 규 격	4,500
장 식 판	1묶음(20kg)	2,500
제 봉 틀	개 당	2,500
진 열 장	대 형	5,500
	소 형	3,500
찬 장	모 든 규 격	3,500
책 상	양 수, 대 형	5,500
	편 수, 소 형	4,500
침 대	1 인 용	12,500
	2 인 용 이 상	18,000
카 페 트	1묶음(20kg) 초과	4,500
	1묶음(20kg) 미만	3,500
캐 비 닷	대 형	6,500
	소 형	4,500
간막이 판넬	개 당	2,500
피 아 노	어 프 라 이 트	12,500
	그 랜 드	18,000
화 장 대	모 든 규 격	3,500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신 발 장	모 든 규 격	2,500
싱 크 대	대 형	4,500
	소 형	2,500
오 락 기 기	대 형	6,500
	소 형	3,500
은 풍 기	대 형	12,500
	소 형	10,000
욕 조	개 당	4,500
유 모 차	개 당	2,500
의류(이불 등)	마 대 당	2,500
의 자	대 형	3,500
	중 형	2,500
	소 형	1,500
장 룡	120cm 장1쪽	18,000
	90cm 장1쪽	12,500
장 식 대	모 든 규 격	4,500
장 식 판	1묶음(20kg)	2,500
제 봉 틀	개 당	2,500
진 열 장	대 형	5,500
	소 형	3,500
찬 장	모 든 규 격	3,500
책 상	양 수, 대 형	5,500
	편 수, 소 형	4,500
침 대	1 인 용	12,500
	2 인 용 이 상	18,000
카 페 트	1묶음(20kg) 초과	4,500
	1묶음(20kg) 미만	3,500
캐 비 닷	대 형	6,500
	소 형	4,500
간막이 판넬	개 당	2,500
피 아 노	어 프 라 이 트	12,500
	그 랜 드	18,000
화 장 대	모 든 규 격	3,500
폐 소 화 기	모 든 규 격	3,500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689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규칙은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를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한다.

제13조제6항제3호 중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를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7항 전단 중 “**2종 효율을**”을 각각 “**효율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구를 말한다**”를 “**것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납입 내역 등에 의한 사용 호수가 확인될 때에는 이를 인정 적용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군산시급수조례**”를 “**급수조례**”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를 “**급수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를 “**급수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을 “**일시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를 “**급수조례**”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납부시기별 납부비율**”을 “**부담금 납부시기와 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개월이내에 50퍼센트를 납부하고, 1년 이내에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완공예정일(임시 사용승인일 포함) 전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입을 협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물 등의 인·허가일 또는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입할 경우 인·허가일 또는 승인년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 하지만, 3년이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잔여 오수발생량의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하려는 연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다.

제16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을 “**조례 제23조에 의한 사용료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면제**”를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감면**”을 “**감면**”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7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규칙은</u> <u>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u>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규칙은 「군산시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u>----- ----- -----.</p>
<p>제3조(공사시행) ①<u>조례</u>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공사시행) ①「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한다)”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일시사용신고) ①<u>조례</u>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일시사용신고) ①<u>공공하수도</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량의 조정) ① ~ ⑤ (생략)</p> <p>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p>	<p>제13조(사용량의 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p>

다.

1.·2. (생략)

3.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자

⑦ 1주택(단독주택, 공공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지하수 사용자도 포함되며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14조(계측기의 점검시험) ① ~

③ (생략)

④계측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군산시급수조례 규정 또는 한국 전력공사의 전력공급 규정에 준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이하 “급수조례” 라 한다)

⑦ -----

----- 요율을 -----

----- 요율을 -----

----- 것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납입내역 등에 의한 사용 호수가 확인될 때에는 이를 인정 적용한다.

제14조(계측기의 점검시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급수조례 -----
-----.

납부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납부시기별 납부비율은 아래와 같이 하되 시설물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아래 시기에 불구하고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

가. (생략)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및 시설물, 건축물 등은 당해 사업 및 시설물, 건축물 등의 인·허가일 또는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50퍼센트를 납부하고, 1년 이내에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착공의 지연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때 납부기한을 연기요청할 수 있다.

<신 설>

-----.

1. -----
----- 부담금 납부시기와 방법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완공예정일 (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전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입을 협의할 수 있다.

<삭 제>

라. 건축물 등의 인·허가일 또는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입할 경우 인·허가일 또는 승인연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하지만, 3년이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잔여 오수발생량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하려는 연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다.

2. (생략)

3.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4. ~ 6. (생략)

제18조(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접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자동모터,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제18조(감면) <삭 제>

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신청 당시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0조(재결 및 통지) ① (생략)

②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그 금

②조례 제23조에 의한 사용료 등을 -----

-----.

③-----

---- 면제 -----
-----.

④감면-----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재결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30일 이내-----
-----.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력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 -----.

③·④ (현행과 같음)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375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별표2]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제5조제3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감 점	비고
공무원의무 위 반 자	○ 정직이상	3.0	
	○ 감 봉	2.0	
	○ 견 책	1.0	
	○ 불문경고	0.7	
	○ 직위해제(직무수행능력부족)	1.0	
	○ 훈 계	0.5/1회	
	○ 기타 공무원 의무위반자	0.3/1회	
근무태도 불량자 등	○ 정당한 상사명령 불복종	1.0/1회	
	○ 상습 연가병가자 (법정연가 및 진단서제외)	0.5/1회	
	○ 무단결근	1.0/1회	
	○ 지 각	0.3/1회	
	○ 장시간 무단이석	0.3/1회	
	○ 무단 조기퇴근	0.3/1회	
	○ 조직내 화합 저해자 - 유언비어 유포자 - 직원 상호간 폭행	0.5/1회 0.5/1회	
	○ 각종교육 및 회의·행사불참	0.3/1회	
○ 각종 지시사항 불이행	0.5/1회		
공무원 친절봉사 저해자	○ 민원 서류 지연 처리자	0.5/1회	
	○ 전화응대 평가시 “하”등급자	0.2/1회	
	○ 친절봉사 이행사항 점검시 적발자	0.3/1회	
	○ 기타 민원인의 지탄 대상자	0.5/1회	

※ 동일사안으로 이종의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점수로 감점처리
- 직위해제후 같은 형의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제5조제3항 관련)			[별표2]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제5조제3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감 점	항 목	세 부 항 목	감 점
공무원의 무위반자	○ 불문경고	0.5	공무원의 무위반자	○ 불문경고	0.7
	○ 직위해제(직무수행능력부족)	0.3		○ 직위해제(직무수행능력부족)	1.0
	○ 훈계	0.2/1회		○ 훈계	0.5/1회
	○ 기타 공무원 의무위반자	0.1		○ 기타 공무원 의무위반자	0.3/1회
근무태도 불량자 등	○ 정당한 상사명령 불복종	0.5/1회	근무태도 불량자 등	○ 정당한 상사명령 불복종	1.0/1회
	○ 상습 연가·병가자 (법정연가 및 진단서제외)	0.3/1회		○ 상습 연가·병가자 (법정연가 및 진단서제외)	0.5/1회
	○ 무단결근	0.5/1회		○ 무단결근	1.0/1회
	○ 조직내 화합 저해자 - 직원 상호간 폭행	0.3/1회		○ 조직내 화합 저해자 - 직원 상호간 폭행	0.5/1회
	○ 각종 지시사항 불이행	0.1/1회		○ 각종 지시사항 불이행	0.5/1회
공무원 친절봉사 저해자	○ 친절봉사 이행사항 점검시 적발자	0.1/1회	공무원 친절봉사 저해자	○ 친절봉사 이행사항 점검시 적발자	0.3/1회
	○ 기타 민원인의 지탄 대상자	0.1/1회		○ 기타 민원인의 지탄 대상자	0.5/1회

군산시 공고 제2019-2062호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군산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운영 취지에 맞도록 안장대상자의 군산시 거주기간을 규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안장기간 규정 및 국가유공자 영예성 훼손자의 안장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장대상자의 군산시 거주기간 제한(3년 이상 군산시 계속 거주)
(안 제3조제1항)
- 안장대상자의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3조제1항제1호)
- 군경합동묘지 안장기간 규정(60년) (안 제6조)
- 안장대상자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근거 마련(안 제14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전라북도 군산시(전화: (063)454-4122, FAX:(063)454-3059,

E-mail: tlsauid1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안장대상)”을 “(안장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가목, 나목에 따른 대상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군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제4조제1항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접하여”를 “잇닿아”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안장기간) ① 시장은 군경묘지의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당”을 “적정”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하여”를 “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퇴거시킴”을 “나가게 함”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를 “해”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제3조의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거나 균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안장대상) ① 사망 당시 군 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 등록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배우자로 한다. <단서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사망한 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로 사망한 자 <p>② (생략) <신설></p>	<p>제3조(안장대상자) ① -----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가목, 나목에 따른 대상자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p>

제4조(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규격) ① 묘비 및 상석의 구조 및 규격은 별표 1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표식을 하거나 임의로 구조의 변경 및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사용신고) ① 안장대상자를 군경묘지에 안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묘지에서 이장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 장소를 지정하되, 최종적으로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연접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고 제14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군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제4조(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규격) ① -----

--- 인공구조물-----.

② -----

----- 그
밖-----.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신고) ① -----

-----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있
달아 -----
-----.

<신 설>

제6조(안장기간) ① 시장은 균경
묘지의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
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영구안
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
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장기간은 사
망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다
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조례 시
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
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사용의 취소 등) ① 사용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
야 한다.

1. (생 략)
2.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
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
였을 경우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8조(사용의 취소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인공구조물-----
--

3. 군경묘지 내에서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 제10조 (생략)

제11조(존엄 유지) ① 군경묘지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 그 밖에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군경묘지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12조(금지행위) 군경묘지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신설>

3. ----- 제13조 -----

② -----

----- 적정 -----

-.

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2조(존엄 유지) ① -----

해-----.
② -----

----- 나가게 할 -----
-.

제13조(금지행위) -----

----- 해-----.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제3조의 안장대상자를 심사하

거나 군경묘지 영예성 훼손 여
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
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
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규 제 영 향 분 석 서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계장 이현현, 주무관 신명숙							
4. 근거법령명등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국가유공자 안장 신청자							
6. 규제존속 기한	○ 조례 존속일까지 - 안장 신청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속 적용하여야 함으로 기간 설정 곤란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 없음 《신설규제》 ○ 안장대상자의 군산시 거주기간 규정 및 범죄경력자 제외 - 안장대상자의 군산시 거주기간 규정 : 3년 계속 거주 - 범죄경력자 안장대상에서 제외							
8. 기타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군산군경합동묘지 운영 취지에 맞도록 군산시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 범죄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안장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안장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 선양에 기여
- 군산시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군산군경합동묘지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없음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안장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군산군경합동묘지의 운영취지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 선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음

5. 경쟁 제한 여부

- 가. 시장경쟁 제한 여부 : 해당없음
- 나. 기업활동 저해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으로 운영중인 현충원과 호국원의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지역 구분없이 안장 가능
- 군산 지역의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군산시 거주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규제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존속기한의 타당성 : 안장 신청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속 적용하여야 함으로 기간 설정 곤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절차 등의 적정성

군산시 고시 제2019 - 117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11.05.

군 산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칭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의 4필지
- 구역면적 : 37,173.60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 명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송중섭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7번지 4층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19.11.05.

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변경)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당초)

- (1) 대지면적 : 33,601.0000m²
- (2) 건축면적 : 7,067.7928m²
- (3) 연 면 적 : 135,791.4316m²
- (4) 건 폐 율 : 21.0345%
- (5) 용 적 률 : 269.9487%
- (6)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7)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16~26층, 아파트 10동 993세대의 부대복리시설

구분	TYPE	세대수	공 급 면 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조합 및 분양 주택	59A	390	59.9095	20.3713	80.2808	29.5154
	59B	176	59.9094	20.4143	80.3237	29.5312
	73	266	73.8054	25.1570	98.9624	36.3837
	84A	134	84.9832	27.4810	112.4642	41.3477
	84B	21	84.8596	28.0791	112.9387	41.5221
	84C	6	84.9699	31.8904	116.8603	42.9639
근린생활시설 (상가 2동)		건물규모		연면적		
		지하1, 지상1층		1,479.8100		544.0555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변경)

- (1) 대지면적 : 33,601.0000m²
(2) 건축면적 : 7,156.3901m² (3) 연 면 적 : 135,162.5780m²
(4) 건 폐 율 : 21.2981% (5) 용 적 륜 : 269.8671%
(6)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7)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16~26층, 아파트 10동 993세대의 부대복리시설

구분	TYPE	세대수	공 급 면 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조합 및 분양 주택	59A	390	59.7894	20.7243	80.5137	29.7545
	59B	176	59.9654	20.6418	80.6072	29.7890
	73	266	73.7280	24.9219	98.3499	36.3460
	84A	134	84.9912	27.4087	112.3999	41.5383
	84B	21	84.9241	28.4874	113.4115	41.9121
	84C	6	84.9220	30.3833	115.3053	42.6120
근린생활시설 (상가 2동)		건물규모		연면적		
		지하1, 지상1층		1.544.2195		383.8882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당초)

- 공동주택

구분		세대수	60㎡미만		85㎡미만			
			59A	59B	73	84A	84B	84C
조합원	일반	673	230	110	200	117	16	
	해경서	5	4				1	
일반		308	152	66	66	15	3	6
보류지		7	4			2	1	
계		993	390	176	266	134	21	6

※ 상기 세대별 분양세대는 건립세대의 향, 위치, 층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조합원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동명칭	분양면적	비고
1동	592.11㎡	
2동	887.70㎡	
합계	1,479.81㎡	

※ 상가 일반분양 수익금은 상가 조합원의 종전소유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분양수익금으로 하며, 상가조합원의 분양 희망에 따라 1동은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2동은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한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변경)

- 공동주택

구분		세대수	60㎡미만		85㎡미만			
			59A	59B	73	84A	84B	84C
조합원	일반	589	203	95	180	96	15	
	해경서	5	4				1	
일반		392	179	81	86	36	4	6
보류지		7	4			2	1	
계		993	390	176	266	134	21	6

※ 상기 세대별 분양세대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결과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동명칭	분양면적	비고
1동	618.63㎡	
2동	925.58㎡	
합계	1,544.21㎡	

※ 상가 일반분양 수익금은 상가 조합원의 종전소유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분양수익금으로 하며, 상가조합원의 분양 희망에 따라 1동은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2동은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한다.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변경 없음)

-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종류	명칭	폭원(M)	연장(M)	면적(m ²)	비고
총계			3,572.60		
소계			3,123.80		
도로	중로 1-74	3~12	689	1,403.80	기존도로 확폭
도로	소로 1-313	2	235	454.70	기존도로 확폭
도로	소로 1-314	2	160	320.40	기존도로 확폭
도로	도로	3	169	495.90	기존도로 확폭
도로	도로	3	78	204.00	가감속차로 신설
도로	도로	3	92	245.00	가감속차로 신설
소계			448.80		
지구대	경찰관파출소		448.80		

-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종류	명칭	면적(m ²)	비고
경찰청	나운지구대	408.80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변경 없음)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3개월 (2016년 2월 ~)

6. 기타 변경인가사항과 관련한 자료는 군산시 주택행정과 (☎063-454-3712) 및 조합사무실(063-461-2563)에 비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9-118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11. 15.

군산시장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63		
성명(법인명)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동부어촌계장		
하천명칭	경포천	하천등급	지방 2급 하천
점용장소 점용목적	○ 전북 군산시 중동 265-34 ○ 어선 접안시설 설치		
점용면적	일시점용 826㎡ / 영구점용 826㎡		
최초허가일	2019년 11월 14일		
점용기간	일시점용 : 2019년 11월 14일 ~ 12월 30일 영구점용 : 공사준공일 ~ 영구		

군산시 고시 제2019-119호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고시

2019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과 지적측량기준점 관측 업무에 따른 지적삼각 보조점(17점) 및 지적도근점(359점)의 측량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15.

군 산 시 장

연번	기준점 번호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경도	X	평면직각좌표(m)					
1	보57	35° 54' 03.40334" N	X	367088.50	중부	8.339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416-6	2019. 08.20	철재
		126° 43' 32.50292" E	Y	175236.75					
2	보77	35° 58' 41.93141" N	X	375643.80	중부	7.835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1142-6	2019. 08.20	철재
		126° 53' 32.02311" E	Y	190280.28					
3	보85	35° 58' 13.63324" N	X	374773.04	중부	5.721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1211	2019. 08.21	철재
		126° 52' 42.97832" E	Y	189050.50					
4	보87	35° 56' 37.59414" N	X	371902.68	중부	5.255	군산시 오식도동 1008	2019. 08.13	철재
		126° 32' 34.66465" E	Y	158762.44					
5	보90	35° 57' 39.00340" N	X	373787.64	중부	9.938	군산시 오식도동 652-1	2019. 08.12	철재
		126° 33' 42.55283" E	Y	160472.45					
6	보94	35° 55' 15.23221" N	X	369287.27	중부	4.359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418	2019. 08.19	철재
		126° 47' 37.52963" E	Y	181385.92					
7	보96	35° 57' 05.60009" N	X	372677.96	중부	10.685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204-1	2019. 08.19	철재
		126° 51' 48.03776" E	Y	187671.04					
8	보99	35° 56' 17.30651" N	X	371189.17	중부	8.519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225-31	2019. 08.20	철재
		126° 51' 56.58514" E	Y	187883.20					
9	보104	35° 59' 58.28933" N	X	377999.37	중부	10.541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943	2019. 08.21	철재
		126° 52' 23.28631" E	Y	188561.32					
10	보105	35° 57' 45.99101" N	X	373934.63	중부	6.297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870	2019. 08.20	철재
		126° 47' 24.05701" E	Y	181058.15					
11	보113	35° 58' 43.20979" N	X	375693.20	중부	16.249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225-8	2019. 08.19	철재
		126° 49' 03.65546" E	Y	183557.11					

12	보117	35° 55' 19.45993" N	X	369410.93	중부	5.141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522-31	2019. 08.16	철재
		126° 49' 55.85873" E	Y	184854.12					
13	보121	35° 55' 11.03111" N	X	369189.00	중부	9.94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776	2019. 08.16	철재
		126° 40' 05.48938" E	Y	170052.58					
14	보154	35° 58' 06.62616" N	X	374655.92	중부	7.553	군산시 비응도동 1-1	2019. 08.13	철재
		126° 31' 18.95457" E	Y	156878.32					
15	보173	35° 58' 11.93312" N	X	374751.34	중부	24.505	군산시 수송동 435-13	2019. 08.20	철재
		126° 42' 54.62328" E	Y	174309.20					
16	보174	35° 57' 33.21513" N	X	373557.81	중부	5.139	군산시 수송동 761-2	2019. 08.20	철재
		126° 42' 56.84936" E	Y	174361.50					
17	보197	35° 54' 47.52993" N	X	368445.66	중부	5.474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555-2	2019. 08.20	철재
		126° 44' 14.47002" E	Y	176292.81					
18	2	35° 54' 19.97770" N	X	367620.61	중부	3.68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88	2019. 08.19	철재
		126° 39' 06.32995" E	Y	168563.79					
19	10	35° 59' 02.36155" N	X	376313.27	중부	4.529	군산시 소룡동 1025-5	2019. 08.14	철재
		126° 41' 15.16597" E	Y	171822.27					
20	65	35° 59' 11.58976" N	X	376593.08	중부	15.100	군산시 신흥동 32-16	2019. 08.14	철재
		126° 42' 14.27472" E	Y	173303.84					
21	66	35° 59' 10.43148" N	X	376557.30	중부	12.089	군산시 신흥동 32-40	2019. 08.14	철재
		126° 42' 15.35931" E	Y	173330.90					
22	242	35° 58' 25.41697" N	X	375167.23	중부	6.219	군산시 서흥남동 835	2019. 08.14	철재
		126° 42' 50.58293" E	Y	174209.18					
23	310	35° 58' 25.05409" N	X	375154.96	중부	4.556	군산시 동흥남동 408	2019. 08.14	철재
		126° 43' 05.40275" E	Y	174580.44					
24	318	35° 58' 22.93454" N	X	375087.88	중부	4.469	군산시 미장동 381-74	2019. 08.14	철재
		126° 43' 30.02533" E	Y	175197.15					
25	563	35° 57' 50.15177" N	X	374073.64	중부	5.501	군산시 조촌동 812	2019. 08.16	철재
		126° 44' 25.46659" E	Y	176583.49					
26	567	35° 58' 02.22034" N	X	374445.88	중부	7.126	군산시 조촌동 805	2019. 08.16	철재
		126° 44' 21.47983" E	Y	176484.59					
27	581	35° 58' 16.21939" N	X	374877.23	중부	8.207	군산시 조촌동 799	2019. 08.16	철재
		126° 44' 23.40875" E	Y	176534.07					
28	593	35° 58' 20.19224" N	X	375001.53	중부	4.220	군산시 경장동 531	2019. 08.16	철재
		126° 43' 56.21899" E	Y	175853.18					
29	596	35° 58' 23.12927" N	X	375092.35	중부	4.124	군산시 조촌동 823	2019. 08.16	철재
		126° 43' 51.89752" E	Y	175745.16					
30	597	35° 58' 24.07151" N	X	375121.38	중부	4.084	군산시 조촌동 823	2019. 08.16	철재
		126° 43' 52.07606" E	Y	175749.71					
31	793	35° 58' 22.22049" N	X	375073.93	중부	11.009	군산시 나운동 872	2019. 08.14	철재
		126° 41' 41.83728" E	Y	172486.53					
32	802	35° 58' 09.95938" N	X	374694.73	중부	5.293	군산시 나운동 875	2019. 08.16	철재
		126° 41' 58.35894" E	Y	172899.30					

33	814	35° 57' 46.75517" N	X	373980.42	중부	6.538	군산시 나운동 875	2019. 08.16	철재
		126° 41' 46.92583" E	Y	172610.62					
34	840	35° 58' 07.24355" N	X	374612.55	중부	29.565	군산시 나운동 872	2019. 08.14	철재
		126° 41' 38.78639" E	Y	172408.65					
35	862	35° 58' 07.43354" N	X	374616.54	중부	5.193	군산시 나운동 875	2019. 08.16	철재
		126° 42' 02.78419" E	Y	173009.94					
36	872	35° 58' 14.61224" N	X	374839.94	중부	27.679	군산시 나운동 872	2019. 08.14	철재
		126° 41' 35.31553" E	Y	172322.40					
37	888	35° 58' 22.58214" N	X	375084.09	중부	16.811	군산시 나운동 872	2019. 08.14	철재
		126° 41' 54.42511" E	Y	172801.94					
38	893	35° 58' 23.02132" N	X	375104.28	중부	4.314	군산시 소룡동 1576	2019. 08.13	철재
		126° 40' 31.75939" E	Y	170730.87					
39	895	35° 58' 15.81223" N	X	374882.14	중부	4.456	군산시 소룡동 1576	2019. 08.13	철재
		126° 40' 31.00199" E	Y	170711.15					
40	914	35° 58' 24.93134" N	X	375160.84	중부	13.562	군산시 소룡동 1575	2019. 08.14	철재
		126° 40' 59.71290" E	Y	171431.41					
41	924	35° 57' 59.50283" N	X	374376.84	중부	22.482	군산시 산북동 3553	2019. 08.13	철재
		126° 41' 02.74069" E	Y	171504.73					
42	936	35° 58' 09.58698" N	X	374687.63	중부	19.441	군산시 소룡동 1579	2019. 08.13	철재
		126° 41' 03.06294" E	Y	171513.81					
43	940	35° 58' 12.93928" N	X	374791.34	중부	18.345	군산시 소룡동 1579	2019. 08.13	철재
		126° 40' 58.30313" E	Y	171394.89					
44	962	35° 58' 16.36951" N	X	374896.75	중부	17.678	군산시 소룡동 1575	2019. 08.13	철재
		126° 41' 02.15662" E	Y	171491.78					
45	1002	35° 58' 19.85577" N	X	375006.09	중부	5.386	군산시 소룡동 1577	2019. 08.13	철재
		126° 40' 39.21764" E	Y	170917.41					
46	1029	35° 58' 05.59861" N	X	374566.37	중부	5.440	군산시 산북동 3552	2019. 08.13	철재
		126° 40' 42.63404" E	Y	171001.55					
47	1039	35° 58' 17.83885" N	X	374943.62	중부	10.504	군산시 소룡동 1578	2019. 08.13	철재
		126° 40' 42.84713" E	Y	171008.14					
48	1042	35° 58' 01.41255" N	X	374437.21	중부	11.091	군산시 산북동 3552	2019. 08.13	철재
		126° 40' 44.28817" E	Y	171042.58					
49	1046	35° 58' 09.14908" N	X	374675.62	중부	5.847	군산시 산북동 3552	2019. 08.13	철재
		126° 40' 44.85515" E	Y	171057.56					
50	1116	35° 58' 04.36079" N	X	374511.22	중부	16.553	군산시 조촌동 882	2019. 08.16	철재
		126° 44' 31.09322" E	Y	176725.64					
51	1139	35° 57' 57.66456" N	X	374306.37	중부	4.814	군산시 경장동 541	2019. 08.16	철재
		126° 44' 08.10098" E	Y	176148.99					
52	1144	35° 58' 05.51503" N	X	374548.54	중부	4.408	군산시 조촌동 891	2019. 08.16	철재
		126° 44' 05.09560" E	Y	176074.35					
53	1162	35° 58' 20.82422" N	X	375020.42	중부	4.619	군산시 조촌동 846	2019. 08.16	철재
		126° 44' 04.70972" E	Y	176065.96					

54	1260	35° 57' 48.71654" N	X	374044.64	중부	22.089	군산시 산북동 3583	2019. 08.14	철재
		126° 40' 59.58245" E	Y	171424.52					
55	1263	35° 57' 45.92317" N	X	373958.86	중부	19.211	군산시 산북동 3583	2019. 08.14	철재
		126° 40' 55.68548" E	Y	171326.59					
56	1271	35° 57' 38.40233" N	X	373728.13	중부	11.269	군산시 산북동 3613	2019. 08.13	철재
		126° 40' 42.66905" E	Y	170999.67					
57	1277	35° 57' 25.01602" N	X	373315.66	중부	14.721	군산시 미룡동 862	2019. 08.13	철재
		126° 40' 41.16516" E	Y	170960.62					
58	1278	35° 57' 23.12301" N	X	373257.32	중부	14.658	군산시 미룡동 862	2019. 08.13	철재
		126° 40' 41.10896" E	Y	170959.02					
59	1305	35° 57' 43.53719" N	X	373887.52	중부	6.539	군산시 산북동 3626	2019. 08.13	철재
		126° 40' 29.09837" E	Y	170660.14					
60	1317	35° 57' 49.11553" N	X	374057.44	중부	21.250	군산시 산북동 3590	2019. 08.14	철재
		126° 40' 53.41200" E	Y	171269.94					
61	1318	35° 57' 47.98495" N	X	374022.77	중부	20.289	군산시 산북동 3590	2019. 08.14	철재
		126° 40' 51.33220" E	Y	171217.72					
62	1330	35° 57' 47.75539" N	X	374016.37	중부	23.350	군산시 산북동 3594	2019. 08.13	철재
		126° 40' 43.09786" E	Y	171011.36					
63	1355	35° 57' 19.69191" N	X	373151.75	중부	10.673	군산시 미룡동 862	2019. 08.13	철재
		126° 40' 38.89349" E	Y	170903.16					
64	1379	35° 57' 55.31685" N	X	374249.95	중부	8.003	군산시 산북동 3570	2019. 08.13	철재
		126° 40' 36.83258" E	Y	170855.14					
65	1410	35° 57' 48.23530" N	X	374031.94	중부	12.551	군산시 산북동 3599	2019. 08.13	철재
		126° 40' 33.66498" E	Y	170775.05					
66	1437	35° 57' 19.18610" N	X	373136.99	중부	7.754	군산시 산북동 3643	2019. 08.13	철재
		126° 40' 28.89623" E	Y	170652.58					
67	1450	35° 57' 39.13001" N	X	373751.80	중부	5.967	군산시 산북동 3626	2019. 08.13	철재
		126° 40' 27.68678" E	Y	170624.32					
68	1468	35° 57' 34.76371" N	X	373617.48	중부	5.176	군산시 산북동 3626	2019. 08.13	철재
		126° 40' 24.56546" E	Y	170545.65					
69	1472	35° 57' 30.44453" N	X	373484.43	중부	4.659	군산시 산북동 3624	2019. 08.13	철재
		126° 40' 23.67978" E	Y	170523.01					
70	1482	35° 57' 27.57398" N	X	373396.00	중부	4.629	군산시 산북동 3624	2019. 08.13	철재
		126° 40' 23.17766" E	Y	170510.14					
71	1489	35° 57' 25.50800" N	X	373332.52	중부	4.527	군산시 산북동 3626	2019. 08.13	철재
		126° 40' 20.75263" E	Y	170449.15					
72	1499	35° 57' 22.33638" N	X	373235.03	중부	4.573	군산시 산북동 3629	2019. 08.13	철재
		126° 40' 17.63814" E	Y	170370.78					
73	1504	35° 57' 22.81618" N	X	373250.15	중부	4.687	군산시 산북동 3629	2019. 08.13	철재
		126° 40' 13.77898" E	Y	170274.12					
74	1512	35° 57' 29.40315" N	X	373450.50	중부	11.622	군산시 미룡동 848	2019. 08.14	철재
		126° 40' 45.76845" E	Y	171076.42					

75	1626	35° 58' 28.69041" N	X	375305.30	중부	4.473	군산시 소룡동 1654	2019. 08.13	철재
		126° 35' 50.27441" E	Y	163679.23					
76	1678	35° 57' 32.11389" N	X	373560.80	중부	4.873	군산시 소룡동 1656	2019. 08.13	철재
		126° 35' 57.02834" E	Y	163841.27					
77	1688	35° 57' 20.30706" N	X	373199.95	중부	5.258	군산시 소룡동 1656	2019. 08.13	철재
		126° 35' 27.59697" E	Y	163102.24					
78	1697	35° 57' 18.94168" N	X	373161.11	중부	5.489	군산시 소룡동 1655	2019. 08.14	철재
		126° 34' 57.00106" E	Y	162335.33					
79	1699	35° 57' 19.09066" N	X	373166.19	중부	5.441	군산시 소룡동 1655	2019. 08.14	철재
		126° 34' 52.44202" E	Y	162221.10					
80	1704	35° 57' 21.83406" N	X	373252.14	중부	5.706	군산시 소룡동 1655	2019. 08.12	철재
		126° 34' 39.55549" E	Y	161898.54					
81	1706	35° 57' 26.64367" N	X	373400.48	중부	5.387	군산시 소룡동 1655	2019. 08.12	철재
		126° 34' 38.63603" E	Y	161876.14					
82	1733	35° 58' 20.29326" N	X	375050.93	중부	4.561	군산시 소룡동 1654	2019. 08.13	철재
		126° 35' 07.88174" E	Y	162616.03					
83	1742	35° 57' 56.56567" N	X	374319.40	중부	4.804	군산시 소룡동 1654	2019. 08.13	철재
		126° 35' 09.76660" E	Y	162660.15					
84	1762	35° 57' 39.92861" N	X	373806.47	중부	4.948	군산시 소룡동 1654	2019. 08.13	철재
		126° 35' 11.08691" E	Y	162691.06					
85	1769	35° 57' 22.60919" N	X	373272.50	중부	5.087	군산시 소룡동 1654	2019. 08.13	철재
		126° 35' 12.46154" E	Y	162723.25					
86	1795	35° 57' 33.91260" N	X	373624.32	중부	5.242	군산시 소룡동 1655	2019. 08.12	철재
		126° 34' 40.57067" E	Y	161925.58					
87	1797	35° 57' 34.12004" N	X	373630.14	중부	5.166	군산시 소룡동 1655	2019. 08.14	철재
		126° 34' 45.87258" E	Y	162058.47					
88	1800	35° 57' 34.39946" N	X	373637.99	중부	5.121	군산시 소룡동 1655	2019. 08.14	철재
		126° 34' 52.93225" E	Y	162235.41					
89	1822	35° 57' 29.27510" N	X	373483.57	중부	5.788	군산시 소룡동 1655	2019. 08.12	철재
		126° 34' 20.53981" E	Y	161423.02					
90	1827	35° 57' 29.54981" N	X	373491.46	중부	5.683	군산시 소룡동 1655	2019. 08.12	철재
		126° 34' 25.79679" E	Y	161554.79					
91	1841	35° 57' 43.28786" N	X	373908.91	중부	4.824	군산시 소룡동 1656	2019. 08.13	철재
		126° 35' 21.42738" E	Y	162950.61					
92	1854	35° 57' 44.49348" N	X	373942.31	중부	5.124	군산시 소룡동 1656	2019. 08.14	철재
		126° 35' 57.53288" E	Y	163855.48					
93	1865	35° 57' 35.28112" N	X	373661.36	중부	5.109	군산시 소룡동 1656	2019. 08.13	철재
		126° 35' 28.72050" E	Y	163132.32					
94	1870	35° 57' 36.29577" N	X	373691.34	중부	5.068	군산시 소룡동 1656	2019. 08.14	철재
		126° 35' 41.12971" E	Y	163443.41					
95	1888	35° 57' 28.42453" N	X	373448.74	중부	5.309	군산시 소룡동 1656	2019. 08.14	철재
		126° 35' 41.07608" E	Y	163441.06					

96	1906	35° 57' 42.01189" N	X	373867.16	중부	5.144	군산시 소룡동 1656	2019. 08.14	철재
		126° 35' 44.59293" E	Y	163530.92					
97	1944	35° 58' 26.79851" N	X	375215.09	중부	25.157	군산시 나운동 872	2019. 08.14	철재
		126° 41' 41.08996" E	Y	172468.25					
98	2209	35° 58' 10.30091" N	X	374694.31	중부	11.000	군산시 조촌동 939	2019. 08.16	철재
		126° 44' 30.95606" E	Y	176722.69					
99	2263	35° 58' 22.63304" N	X	375073.96	중부	13.699	군산시 조촌동 902	2019. 08.16	철재
		126° 44' 37.70059" E	Y	176892.67					
100	2291	35° 54' 17.21953" N	X	367517.57	중부	4.218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145	2019. 08.19	철재
		126° 42' 47.57543" E	Y	174111.36					
101	2321	35° 54' 13.50931" N	X	367404.85	중부	4.085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155	2019. 08.19	철재
		126° 42' 25.64844" E	Y	173561.18					
102	2329	35° 54' 02.40449" N	X	367061.21	중부	4.090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138	2019. 08.20	철재
		126° 42' 44.02395" E	Y	174020.96					
103	2334	35° 54' 09.97086" N	X	367293.75	중부	4.023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121	2019. 08.20	철재
		126° 42' 53.11830" E	Y	174249.70					
104	2336	35° 54' 09.79643" N	X	367289.86	중부	5.275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142	2019. 08.19	철재
		126° 42' 33.00473" E	Y	173745.31					
105	2359	35° 53' 48.44585" N	X	366626.42	중부	4.198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56	2019. 08.20	철재
		126° 43' 47.74647" E	Y	175617.74					
106	2365	35° 54' 06.83749" N	X	367194.16	중부	4.258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06	2019. 08.20	철재
		126° 43' 35.18909" E	Y	175304.41					
107	2366	35° 53' 59.41965" N	X	366965.20	중부	4.332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28	2019. 08.20	철재
		126° 43' 39.88671" E	Y	175421.57					
108	2369	35° 53' 51.57683" N	X	366724.32	중부	4.376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49	2019. 08.20	철재
		126° 43' 27.82904" E	Y	175118.52					
109	2371	35° 53' 59.22643" N	X	366960.70	중부	4.411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14	2019. 08.20	철재
		126° 43' 19.20607" E	Y	174902.94					
110	2374	35° 53' 59.40131" N	X	366965.48	중부	4.432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18	2019. 08.20	철재
		126° 43' 27.88352" E	Y	175120.56					
111	2380	35° 54' 02.66936" N	X	367067.80	중부	4.307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125	2019. 08.20	철재
		126° 43' 05.60140" E	Y	174562.08					
112	2381	35° 53' 17.74963" N	X	365680.76	중부	5.787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473-17	2019. 08.19	철재
		126° 43' 41.33482" E	Y	175454.31					
113	2387	35° 53' 28.46710" N	X	366012.55	중부	4.341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66	2019. 08.20	철재
		126° 43' 20.66085" E	Y	174936.73					
114	2391	35° 53' 33.59196" N	X	366169.07	중부	4.453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75	2019. 08.19	철재
		126° 43' 41.07573" E	Y	175449.17					
115	2393	35° 53' 37.02743" N	X	366275.25	중부	4.462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63-4	2019. 08.19	철재
		126° 43' 36.75562" E	Y	175341.12					
116	2398	35° 53' 36.90876" N	X	366272.51	중부	4.567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63	2019. 08.20	철재
		126° 43' 23.75597" E	Y	175015.09					

117	2401	35° 53' 41.01996" N	X	366401.02	중부	4.005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81	2019. 08.20	철재
		126° 42' 58.87435" E	Y	174391.45					
118	2403	35° 53' 43.33690" N	X	366472.99	중부	4.015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185-2	2019. 08.20	철재
		126° 42' 51.19828" E	Y	174199.15					
119	2415	35° 53' 51.46788" N	X	366722.50	중부	4.554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33	2019. 08.20	철재
		126° 43' 06.34688" E	Y	174579.78					
120	2416	35° 53' 51.53651" N	X	366724.00	중부	4.922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33	2019. 08.20	철재
		126° 43' 14.88672" E	Y	174793.95					
121	2417	35° 53' 45.88171" N	X	366549.99	중부	4.452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43	2019. 08.20	철재
		126° 43' 10.88183" E	Y	174693.01					
122	2713	35° 56' 15.89049" N	X	371160.44	중부	8.024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566	2019. 08.19	철재
		126° 46' 32.70175" E	Y	179764.94					
123	2720	35° 56' 12.38999" N	X	371052.13	중부	6.294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576	2019. 08.19	철재
		126° 46' 39.88051" E	Y	179944.63					
124	2722	35° 56' 13.79036" N	X	371095.58	중부	7.516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565	2019. 08.19	철재
		126° 46' 34.99862" E	Y	179822.36					
125	2725	35° 56' 10.96265" N	X	371008.17	중부	6.619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577	2019. 08.19	철재
		126° 46' 39.34400" E	Y	179931.08					
126	2731	35° 56' 08.89747" N	X	370944.70	중부	8.112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570	2019. 08.19	철재
		126° 46' 36.16180" E	Y	179851.18					
127	2741	35° 59' 08.06238" N	X	376459.54	중부	24.444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536	2019. 08.20	철재
		126° 48' 56.47154" E	Y	183378.58					
128	2749	35° 59' 04.24254" N	X	376341.49	중부	10.708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546	2019. 08.19	철재
		126° 49' 03.16419" E	Y	183546.01					
129	2782	35° 56' 17.03019" N	X	371190.10	중부	5.021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130	2019. 08.20	철재
		126° 48' 13.97991" E	Y	182303.57					
130	2785	35° 56' 23.28571" N	X	371382.47	중부	5.571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930-3	2019. 08.20	철재
		126° 48' 22.68149" E	Y	182522.06					
131	2789	35° 56' 17.65086" N	X	371207.99	중부	4.382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497-2	2019. 08.20	철재
		126° 48' 38.97715" E	Y	182930.16					
132	2799	35° 56' 07.70889" N	X	370903.32	중부	5.263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142-2	2019. 08.20	철재
		126° 48' 03.63355" E	Y	182043.65					
133	2803	35° 56' 13.59569" N	X	371085.55	중부	4.503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156	2019. 08.20	철재
		126° 47' 48.46293" E	Y	181663.76					
134	2809	35° 56' 05.53346" N	X	370838.88	중부	4.331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191	2019. 08.19	철재
		126° 47' 14.37589" E	Y	180808.82					
135	2816	35° 55' 59.81501" N	X	370661.86	중부	4.848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176	2019. 08.20	철재
		126° 47' 28.45790" E	Y	181161.42					
136	2820	35° 55' 58.86851" N	X	370631.82	중부	4.206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180	2019. 08.14	철재
		126° 47' 44.89025" E	Y	181573.26					
137	2825	35° 55' 53.72105" N	X	370471.96	중부	4.247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202	2019. 08.14	철재
		126° 48' 08.36666" E	Y	182161.42					

138	2827	35° 55' 58.63362" N	X	370622.87	중부	5.027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188	2019. 08.14	철재
		126° 48' 18.23500" E	Y	182409.09					
139	2830	35° 55' 57.61667" N	X	370591.14	중부	4.101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189	2019. 08.14	철재
		126° 48' 26.06966" E	Y	182605.42					
140	2837	35° 55' 45.54780" N	X	370219.70	중부	4.741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188	2019. 08.14	철재
		126° 48' 15.09348" E	Y	182329.53					
141	2842	35° 55' 41.63449" N	X	370099.99	중부	4.963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231	2019. 08.16	철재
		126° 47' 57.33225" E	Y	181884.05					
142	2858	35° 55' 34.14900" N	X	369868.95	중부	4.687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261	2019. 08.16	철재
		126° 48' 03.67188" E	Y	182042.50					
143	2860	35° 55' 27.70475" N	X	369670.50	중부	4.234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282	2019. 08.16	철재
		126° 48' 00.35479" E	Y	181958.94					
144	2866	35° 55' 13.74562" N	X	369239.10	중부	4.200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295	2019. 08.16	철재
		126° 48' 23.37320" E	Y	182535.15					
145	2874	35° 55' 08.68158" N	X	369083.47	중부	3.843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304	2019. 08.16	철재
		126° 48' 14.23497" E	Y	182305.73					
146	2882	35° 56' 25.11480" N	X	371431.77	중부	5.579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964	2019. 08.20	철재
		126° 51' 03.42430" E	Y	186551.08					
147	2883	35° 56' 29.67804" N	X	371572.15	중부	5.599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964	2019. 08.20	철재
		126° 51' 10.40133" E	Y	186726.17					
148	2911	35° 56' 50.03159" N	X	372195.97	중부	5.378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169	2019. 08.20	철재
		126° 52' 53.33038" E	Y	189306.74					
149	2922	35° 55' 59.96122" N	X	370653.20	중부	4.150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958-1	2019. 08.19	철재
		126° 52' 37.73497" E	Y	188913.94					
150	2925	35° 56' 04.06145" N	X	370780.37	중부	4.572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958-1	2019. 08.19	철재
		126° 52' 13.41193" E	Y	188304.42					
151	2930	35° 56' 17.70668" N	X	371201.30	중부	4.916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165	2019. 08.20	철재
		126° 52' 02.51943" E	Y	188031.96					
152	2931	35° 56' 20.78164" N	X	371296.27	중부	4.607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148	2019. 08.19	철재
		126° 51' 56.90724" E	Y	187891.42					
153	2933	35° 56' 13.72740" N	X	371078.98	중부	4.813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227-17	2019. 08.20	철재
		126° 51' 52.97356" E	Y	187792.52					
154	2953	35° 56' 41.06192" N	X	371922.44	중부	5.448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987	2019. 08.20	철재
		126° 51' 26.13247" E	Y	187120.97					
155	2977	35° 56' 35.81130" N	X	371758.74	중부	4.823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181	2019. 08.20	철재
		126° 52' 19.91942" E	Y	188468.82					
156	2978	35° 56' 34.93969" N	X	371731.71	중부	5.182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181	2019. 08.20	철재
		126° 52' 24.87016" E	Y	188592.86					
157	2990	35° 57' 04.63000" N	X	372648.52	중부	4.880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965	2019. 08.20	철재
		126° 51' 35.06171" E	Y	187345.81					
158	2992	35° 57' 11.13665" N	X	372849.50	중부	4.654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729	2019. 08.20	철재
		126° 51' 23.24341" E	Y	187049.92					

159	3006	35° 56' 21.98242" N	X	371333.53	중부	4.264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148	2019. 08.20	철재
		126° 51' 49.85054" E	Y	187714.59					
160	3012	35° 56' 33.82096" N	X	371697.06	중부	5.869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207	2019. 08.20	철재
		126° 52' 29.95057" E	Y	188720.15					
161	3024	35° 56' 07.06252" N	X	370872.28	중부	5.144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236	2019. 08.19	철재
		126° 52' 31.25527" E	Y	188751.80					
162	3028	35° 56' 15.94821" N	X	371146.36	중부	5.155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211	2019. 08.20	철재
		126° 52' 24.79215" E	Y	188590.15					
163	3030	35° 56' 10.02769" N	X	370964.24	중부	5.011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199	2019. 08.20	철재
		126° 52' 13.99598" E	Y	188319.30					
164	3035	35° 56' 20.07301" N	X	371276.20	중부	4.359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124	2019. 08.20	철재
		126° 51' 08.12644" E	Y	186668.71					
165	3252	35° 57' 09.09282" N	X	372784.82	중부	4.868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691	2019. 08.21	철재
		126° 52' 11.03706" E	Y	188247.56					
166	3254	35° 57' 04.53883" N	X	372643.89	중부	5.081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711	2019. 08.19	철재
		126° 52' 28.48822" E	Y	188684.72					
167	3255	35° 57' 02.45544" N	X	372579.41	중부	4.775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711	2019. 08.21	철재
		126° 52' 36.71302" E	Y	188890.76					
168	3257	35° 57' 07.38985" N	X	372731.38	중부	4.995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707	2019. 08.21	철재
		126° 52' 40.41533" E	Y	188983.73					
169	3273	35° 57' 50.91926" N	X	374072.64	중부	6.118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876	2019. 08.21	철재
		126° 52' 53.22648" E	Y	189306.42					
170	3280	35° 58' 18.25338" N	X	374915.14	중부	5.226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719-24	2019. 08.21	철재
		126° 52' 52.89319" E	Y	189299.09					
171	3314	35° 57' 32.34662" N	X	373500.63	중부	5.888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889	2019. 08.21	철재
		126° 52' 39.35848" E	Y	188958.21					
172	3323	35° 57' 14.55970" N	X	372952.83	중부	5.763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704	2019. 08.21	철재
		126° 52' 25.92146" E	Y	188620.79					
173	3328	35° 57' 27.27658" N	X	373345.05	중부	5.395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681	2019. 08.21	철재
		126° 52' 17.99296" E	Y	188422.62					
174	3431	35° 55' 00.83005" N	X	368879.76	중부	5.107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09-93	2019. 08.19	철재
		126° 39' 06.17216" E	Y	168564.32					
175	3502	35° 57' 59.53095" N	X	374419.99	중부	6.577	군산시 오식도동 809	2019. 08.12	철재
		126° 33' 45.61397" E	Y	160551.99					
176	3509	35° 58' 00.66915" N	X	374452.66	중부	6.485	군산시 오식도동 811	2019. 08.13	철재
		126° 34' 07.20440" E	Y	161093.12					
177	3569	35° 57' 39.55087" N	X	373804.00	중부	3.292	군산시 오식도동 762	2019. 08.12	철재
		126° 33' 47.13061" E	Y	160587.24					
178	3572	35° 57' 43.41731" N	X	373923.20	중부	3.679	군산시 오식도동 751	2019. 08.12	철재
		126° 33' 46.81850" E	Y	160579.95					
179	3578	35° 57' 54.15320" N	X	374254.20	중부	7.285	군산시 오식도동 720	2019. 08.13	철재
		126° 33' 45.94450" E	Y	160559.53					

180	3591	35° 57' 39.71081" N	X	373808.58	중부	3.481	군산시 오식도동 762	2019. 08.12	철재
		126° 33' 50.24399" E	Y	160665.27					
181	3602	35° 57' 58.34138" N	X	374382.81	중부	6.205	군산시 오식도동 705	2019. 08.13	철재
		126° 33' 50.21838" E	Y	160667.20					
182	3623	35° 57' 58.51446" N	X	374387.78	중부	6.086	군산시 오식도동 707	2019. 08.13	철재
		126° 33' 53.51932" E	Y	160749.93					
183	3632	35° 57' 39.97022" N	X	373816.04	중부	3.667	군산시 오식도동 763	2019. 08.12	철재
		126° 33' 55.00033" E	Y	160784.49					
184	3653	35° 57' 40.12464" N	X	373820.47	중부	3.884	군산시 오식도동 763	2019. 08.12	철재
		126° 33' 57.91949" E	Y	160857.66					
185	3654	35° 57' 40.20979" N	X	373822.92	중부	4.125	군산시 오식도동 763	2019. 08.12	철재
		126° 33' 59.50394" E	Y	160897.38					
186	3662	35° 57' 54.80693" N	X	374272.97	중부	5.581	군산시 오식도동 721	2019. 08.13	철재
		126° 33' 58.32351" E	Y	160869.80					
187	3664	35° 57' 58.75620" N	X	374394.72	중부	6.277	군산시 오식도동 708	2019. 08.13	철재
		126° 33' 58.06185" E	Y	160863.78					
188	3683	35° 57' 55.13802" N	X	374282.48	중부	5.833	군산시 오식도동 771	2019. 08.13	철재
		126° 34' 04.58718" E	Y	161026.79					
189	3699	35° 57' 55.22001" N	X	374284.83	중부	5.840	군산시 오식도동 771	2019. 08.13	철재
		126° 34' 06.16967" E	Y	161066.45					
190	3702	35° 57' 59.20891" N	X	374407.64	중부	6.338	군산시 오식도동 770	2019. 08.13	철재
		126° 34' 07.36963" E	Y	161097.06					
191	3713	35° 57' 40.77780" N	X	373839.23	중부	6.443	군산시 오식도동 803	2019. 08.12	철재
		126° 34' 10.34570" E	Y	161169.13					
192	3748	35° 57' 41.26621" N	X	373853.26	중부	8.425	군산시 오식도동 802	2019. 08.12	철재
		126° 34' 19.54629" E	Y	161399.74					
193	3749	35° 57' 43.05201" N	X	373908.33	중부	9.208	군산시 오식도동 802	2019. 08.12	철재
		126° 34' 19.35175" E	Y	161395.11					
194	3750	35° 57' 45.13256" N	X	373972.47	중부	10.076	군산시 오식도동 792	2019. 08.12	철재
		126° 34' 19.23837" E	Y	161392.55					
195	4186	35° 54' 55.39566" N	X	368670.40	중부	3.611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1465	2019. 08.14	철재
		126° 49' 29.41954" E	Y	184189.96					
196	4191	35° 55' 03.98373" N	X	368934.87	중부	3.900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1455	2019. 08.14	철재
		126° 49' 34.45579" E	Y	184316.70					
197	4195	35° 54' 45.62211" N	X	368368.55	중부	3.927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1457	2019. 08.14	철재
		126° 49' 43.11170" E	Y	184532.72					
198	4205	35° 54' 55.10595" N	X	368660.63	중부	3.817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947~208	2019. 08.14	철재
		126° 49' 48.23253" E	Y	184661.62					
199	4207	35° 55' 09.61022" N	X	369107.64	중부	3.773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1432	2019. 08.16	철재
		126° 49' 49.04248" E	Y	184682.71					
200	4226	35° 59' 04.61038" N	X	376351.79	중부	7.540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584	2019. 08.20	철재
		126° 49' 25.74747" E	Y	184111.76					

201	4230	35° 59' 09.11087" N	X	376491.09	중부	9.012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590	2019. 08.20	철재
		126° 49' 13.02114" E	Y	183793.21					
202	4234	35° 59' 15.73961" N	X	376695.84	중부	13.749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574	2019. 08.20	철재
		126° 49' 03.40328" E	Y	183552.67					
203	4244	35° 58' 47.58131" N	X	375827.94	중부	9.786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79	2019. 08.19	철재
		126° 49' 03.54806" E	Y	183554.67					
204	4252	35° 58' 52.11872" N	X	375967.56	중부	7.654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598	2019. 08.19	철재
		126° 49' 08.67571" E	Y	183683.39					
205	4262	35° 55' 05.59089" N	X	369021.67	중부	4.57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715-3	2019. 08.19	철재
		126° 40' 01.38025" E	Y	169948.99					
206	4266	35° 54' 49.06563" N	X	368513.28	중부	4.16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628	2019. 08.19	철재
		126° 39' 50.36368" E	Y	169671.04					
207	4267	35° 54' 45.44946" N	X	368401.82	중부	3.97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628	2019. 08.19	철재
		126° 39' 50.42080" E	Y	169672.08					
208	4270	35° 54' 39.69204" N	X	368223.82	중부	3.95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634	2019. 08.19	철재
		126° 39' 56.81069" E	Y	169831.69					
209	4272	35° 54' 36.94871" N	X	368138.53	중부	4.05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634	2019. 08.19	철재
		126° 40' 05.45539" E	Y	170048.16					
210	4277	35° 54' 23.50336" N	X	367723.32	중부	3.915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71	2019. 08.19	철재
		126° 40' 14.90169" E	Y	170283.62					
211	4279	35° 54' 18.07451" N	X	367555.50	중부	4.07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645	2019. 08.19	철재
		126° 40' 20.74186" E	Y	170429.50					
212	4292	35° 54' 38.05945" N	X	368174.64	중부	3.94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45	2019. 08.19	철재
		126° 39' 43.53549" E	Y	169498.66					
213	4294	35° 54' 45.60148" N	X	368407.40	중부	3.78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39	2019. 08.19	철재
		126° 39' 40.05043" E	Y	169412.08					
214	4308	35° 55' 13.21298" N	X	369260.87	중부	8.30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06	2019. 08.19	철재
		126° 39' 12.35957" E	Y	168720.80					
215	4311	35° 55' 10.04729" N	X	369162.29	중부	3.737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13	2019. 08.19	철재
		126° 39' 23.77865" E	Y	169006.75					
216	4319	35° 54' 52.90089" N	X	368631.79	중부	3.89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33	2019. 08.19	철재
		126° 39' 46.92531" E	Y	169585.23					
217	4323	35° 54' 30.67365" N	X	367945.67	중부	4.04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58	2019. 08.19	철재
		126° 39' 58.94593" E	Y	169884.28					
218	4472	35° 57' 12.12448" N	X	372949.26	중부	6.008	군산시 내초동 229	2019. 08.13	철재
		126° 35' 13.28191" E	Y	162742.44					
219	4474	35° 57' 03.36852" N	X	372679.30	중부	5.148	군산시 오식도동 826	2019. 08.13	철재
		126° 35' 14.00825" E	Y	162759.50					
220	4478	35° 57' 00.02817" N	X	372578.06	중부	3.973	군산시 오식도동 825	2019. 08.13	철재
		126° 34' 57.90395" E	Y	162355.47					
221	4480	35° 57' 04.35633" N	X	372712.13	중부	3.489	군산시 오식도동 824	2019. 08.14	철재
		126° 34' 51.72079" E	Y	162201.08					

222	4484	35° 57' 03.09738" N	X	372675.52	중부	3.376	군산시 오식도동 823	2019. 08.12	철재
		126° 34' 31.51478" E	Y	161694.53					
223	4491	35° 57' 15.10940" N	X	373045.83	중부	2.923	군산시 오식도동 823	2019. 08.12	철재
		126° 34' 30.81379" E	Y	161678.57					
224	4506	35° 56' 52.69538" N	X	372351.29	중부	5.062	군산시 오식도동 827	2019. 08.13	철재
		126° 35' 05.01488" E	Y	162532.71					
225	4508	35° 56' 51.43057" N	X	372313.65	중부	5.027	군산시 오식도동 828	2019. 08.13	철재
		126° 34' 52.45618" E	Y	162217.80					
226	4643	35° 54' 28.10420" N	X	367870.09	중부	4.13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92	2019. 08.19	철재
		126° 39' 17.52182" E	Y	168845.31					
227	4648	35° 54' 07.95939" N	X	367249.17	중부	2.75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05	2019. 08.19	철재
		126° 39' 17.78807" E	Y	168849.80					
228	4669	35° 54' 42.50537" N	X	368313.93	중부	3.68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67	2019. 08.19	철재
		126° 39' 17.83055" E	Y	168854.62					
229	4675	35° 54' 46.11296" N	X	368426.14	중부	3.90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29	2019. 08.19	철재
		126° 39' 06.34588" E	Y	168567.06					
230	4676	35° 54' 51.93826" N	X	368605.69	중부	3.72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29	2019. 08.19	철재
		126° 39' 06.34475" E	Y	168567.67					
231	4677	35° 54' 16.16974" N	X	367503.25	중부	3.36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00	2019. 08.19	철재
		126° 39' 06.28267" E	Y	168562.18					
232	4688	35° 54' 51.22461" N	X	368543.02	중부	3.791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1497-9	2019. 08.14	철재
		126° 49' 03.71408" E	Y	183545.22					
233	4689	35° 54' 57.43340" N	X	368734.52	중부	3.861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1497-9	2019. 08.14	철재
		126° 49' 00.75482" E	Y	183471.38					
234	4691	35° 54' 52.96187" N	X	368597.02	중부	3.927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1486	2019. 08.14	철재
		126° 48' 53.99621" E	Y	183301.67					
235	4705	35° 54' 45.58312" N	X	368370.73	중부	3.812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339	2019. 08.14	철재
		126° 48' 30.52604" E	Y	182712.77					
236	4910	35° 58' 09.52075" N	X	374734.13	중부	4.054	군산시 오식도동 520	2019. 08.12	철재
		126° 32' 51.05993" E	Y	159186.50					
237	4911	35° 58' 10.20800" N	X	374754.78	중부	4.361	군산시 오식도동 516	2019. 08.12	철재
		126° 32' 55.69127" E	Y	159302.64					
238	4920	35° 58' 17.50926" N	X	374975.03	중부	4.229	군산시 오식도동 516	2019. 08.12	철재
		126° 33' 37.53794" E	Y	160352.13					
239	4962	35° 58' 02.58853" N	X	374520.52	중부	2.100	군산시 오식도동 519	2019. 08.12	철재
		126° 32' 50.62124" E	Y	159174.52					
240	4966	35° 57' 38.93976" N	X	373791.24	중부	1.930	군산시 오식도동 523	2019. 08.12	철재
		126° 32' 53.79591" E	Y	159250.68					
241	4974	35° 57' 53.68359" N	X	374244.12	중부	2.024	군산시 오식도동 521	2019. 08.12	철재
		126° 33' 07.28909" E	Y	159590.88					
242	4978	35° 57' 52.44020" N	X	374207.49	중부	2.109	군산시 오식도동 521	2019. 08.12	철재
		126° 32' 52.61505" E	Y	159223.02					

243	5014	35° 57' 53.14453" N	X	374227.03	중부	2.235	군산시 오식도동 521	2019. 08.12	철재
		126° 33' 11.42691" E	Y	159694.49					
244	5017	35° 57' 45.79551" N	X	373999.42	중부	1.964	군산시 오식도동 521	2019. 08.12	철재
		126° 33' 20.99377" E	Y	159933.17					
245	5019	35° 57' 42.58224" N	X	373900.31	중부	1.921	군산시 오식도동 521	2019. 08.12	철재
		126° 33' 21.69014" E	Y	159950.17					
246	5022	35° 57' 40.25585" N	X	373828.97	중부	1.902	군산시 오식도동 523	2019. 08.12	철재
		126° 33' 18.45193" E	Y	159868.70					
247	5024	35° 57' 39.88255" N	X	373818.27	중부	1.800	군산시 오식도동 523	2019. 08.12	철재
		126° 33' 11.38993" E	Y	159691.69					
248	5035	35° 58' 17.89070" N	X	374986.22	중부	4.313	군산시 오식도동 516	2019. 08.12	철재
		126° 33' 42.58510" E	Y	160478.64					
249	5039	35° 58' 19.80186" N	X	375043.16	중부	4.326	군산시 오식도동 516	2019. 08.13	철재
		126° 34' 00.16082" E	Y	160919.26					
250	5065	35° 55' 05.76572" N	X	368992.42	중부	4.127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73-12	2019. 08.14	철재
		126° 48' 38.00783" E	Y	182901.57					
251	5067	35° 55' 16.12940" N	X	369310.88	중부	3.959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696-28	2019. 08.16	철재
		126° 48' 58.24413" E	Y	183409.52					
252	5070	35° 55' 14.57414" N	X	369262.42	중부	3.918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697-30	2019. 08.16	철재
		126° 49' 09.52396" E	Y	183692.22					
253	5071	35° 54' 57.77664" N	X	368745.71	중부	4.576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15	2019. 08.14	철재
		126° 48' 47.90792" E	Y	183149.31					
254	5074	35° 55' 08.22730" N	X	369067.91	중부	4.076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75-17	2019. 08.16	철재
		126° 48' 45.86373" E	Y	183098.67					
255	5105	35° 58' 04.88691" N	X	374594.50	중부	2.398	군산시 비응도동 9	2019. 08.13	철재
		126° 32' 23.85882" E	Y	158504.29					
256	5108	35° 57' 38.72461" N	X	373787.87	중부	1.666	군산시 비응도동 9	2019. 08.12	철재
		126° 32' 25.94638" E	Y	158552.80					
257	5119	35° 57' 34.73082" N	X	373658.52	중부	3.091	군산시 오식도동 848	2019. 08.13	철재
		126° 33' 19.83325" E	Y	159902.54					
258	5126	35° 57' 15.81484" N	X	373072.83	중부	2.172	군산시 오식도동 861	2019. 08.13	철재
		126° 33' 43.32297" E	Y	160488.54					
259	5138	35° 56' 46.47781" N	X	372166.38	중부	4.941	군산시 오식도동 1008	2019. 08.13	철재
		126° 34' 03.26031" E	Y	160984.16					
260	5146	35° 56' 43.93775" N	X	372090.92	중부	4.984	군산시 오식도동 1008	2019. 08.13	철재
		126° 33' 37.98327" E	Y	160350.30					
261	5153	35° 56' 39.34033" N	X	371954.45	중부	5.075	군산시 오식도동 1008	2019. 08.12	철재
		126° 32' 52.27411" E	Y	159204.04					
262	5157	35° 56' 35.86996" N	X	371851.52	중부	4.987	군산시 비응도동 33	2019. 08.13	철재
		126° 32' 17.89293" E	Y	158341.83					
263	5197	35° 57' 30.93435" N	X	373554.80	중부	2.054	군산시 비응도동 15	2019. 08.12	철재
		126° 31' 27.30893" E	Y	157082.28					

264	5199	35° 57' 31.66650" N	X	373575.69	중부	1.484	군산시 비응도동 15	2019. 08.12	철재
		126° 31' 41.08708" E	Y	157427.66					
265	5203	35° 57' 33.43027" N	X	373626.05	중부	1.650	군산시 비응도동 15	2019. 08.12	철재
		126° 32' 14.44903" E	Y	158263.92					
266	5204	35° 57' 33.02628" N	X	373614.51	중부	2.845	군산시 비응도동 15	2019. 08.12	철재
		126° 32' 06.78812" E	Y	158071.89					
267	5217	35° 57' 11.01886" N	X	372935.96	중부	1.903	군산시 비응도동 35	2019. 08.12	철재
		126° 32' 08.77169" E	Y	158118.37					
268	5218	35° 57' 24.77146" N	X	373357.53	중부	1.671	군산시 비응도동 33	2019. 08.12	철재
		126° 32' 28.27503" E	Y	158609.13					
269	5220	35° 57' 11.94475" N	X	372962.04	중부	1.746	군산시 비응도동 33	2019. 08.12	철재
		126° 32' 29.49601" E	Y	158637.87					
270	5231	35° 57' 13.16376" N	X	372998.93	중부	1.898	군산시 오식도동 861	2019. 08.12	철재
		126° 32' 35.36252" E	Y	158785.06					
271	5232	35° 57' 13.54345" N	X	373009.79	중부	2.191	군산시 오식도동 861	2019. 08.12	철재
		126° 32' 42.52658" E	Y	158964.65					
272	5234	35° 57' 14.57484" N	X	373039.32	중부	2.071	군산시 오식도동 861	2019. 08.13	철재
		126° 33' 01.99037" E	Y	159452.56					
273	5236	35° 57' 15.28268" N	X	373059.59	중부	2.076	군산시 오식도동 861	2019. 08.13	철재
		126° 33' 15.44379" E	Y	159789.81					
274	5247	35° 56' 58.64759" N	X	372557.68	중부	2.333	군산시 비응도동 35	2019. 08.13	철재
		126° 31' 43.54452" E	Y	157484.32					
275	5249	35° 57' 04.94131" N	X	372750.90	중부	1.980	군산시 비응도동 35	2019. 08.13	철재
		126° 31' 49.93347" E	Y	157645.37					
276	5251	35° 57' 01.55085" N	X	372641.61	중부	2.079	군산시 비응도동 33	2019. 08.12	철재
		126° 32' 30.13169" E	Y	158652.29					
277	5252	35° 56' 56.36864" N	X	372481.82	중부	2.022	군산시 비응도동 33	2019. 08.13	철재
		126° 32' 30.64982" E	Y	158664.53					
278	5255	35° 56' 57.76188" N	X	372521.70	중부	2.203	군산시 오식도동 874	2019. 08.12	철재
		126° 32' 56.88694" E	Y	159322.28					
279	5264	35° 56' 59.00464" N	X	372558.49	중부	2.393	군산시 오식도동 872	2019. 08.13	철재
		126° 33' 10.05146" E	Y	159652.38					
280	5280	35° 56' 43.48236" N	X	372084.53	중부	2.383	군산시 비응도동 33	2019. 08.13	철재
		126° 32' 31.57913" E	Y	158685.95					
281	5307	35° 57' 30.80573" N	X	373532.68	중부	2.450	군산시 소룡동 1672	2019. 08.12	철재
		126° 34' 03.02150" E	Y	160984.23					
282	5310	35° 57' 17.10952" N	X	373111.97	중부	2.325	군산시 오식도동 861	2019. 08.13	철재
		126° 33' 50.12619" E	Y	160659.21					
283	5311	35° 57' 17.47217" N	X	373122.38	중부	2.436	군산시 오식도동 861	2019. 08.12	철재
		126° 33' 57.00113" E	Y	160831.54					
284	5314	35° 57' 01.63153" N	X	372633.81	중부	2.762	군산시 오식도동 872	2019. 08.12	철재
		126° 33' 59.96955" E	Y	160903.76					

285	5320	35° 56' 13.06455" N	X	371060.03	중부	5.360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221-4	2019. 08.19	철재
		126° 51' 12.10137" E	Y	186768.01					
286	5325	35° 55' 51.29970" N	X	370388.56	중부	5.490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281-2	2019. 08.16	철재
		126° 51' 29.65705" E	Y	187207.08					
287	5327	35° 55' 38.31725" N	X	369988.48	중부	5.145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014-1	2019. 08.16	철재
		126° 51' 27.92769" E	Y	187163.14					
288	5331	35° 55' 24.09785" N	X	369550.81	중부	8.123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024-1	2019. 08.16	철재
		126° 51' 11.79498" E	Y	186758.06					
289	5334	35° 55' 19.61762" N	X	369413.41	중부	8.002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637-21	2019. 08.16	철재
		126° 50' 53.85119" E	Y	186308.00					
290	5337	35° 55' 36.24653" N	X	369925.93	중부	4.153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176	2019. 08.16	철재
		126° 50' 54.05244" E	Y	186313.85					
291	5341	35° 55' 56.75364" N	X	370557.80	중부	4.665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145	2019. 08.16	철재
		126° 50' 59.20303" E	Y	186443.94					
292	5343	35° 56' 09.07801" N	X	370937.53	중부	4.655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145	2019. 08.16	철재
		126° 51' 02.39342" E	Y	186524.49					
293	5345	35° 56' 01.38637" N	X	370700.22	중부	4.591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148	2019. 08.16	철재
		126° 51' 08.79825" E	Y	186684.67					
294	5346	35° 56' 06.39307" N	X	370854.16	중부	4.720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152	2019. 08.19	철재
		126° 51' 18.83802" E	Y	186936.56					
295	5351	35° 55' 53.88436" N	X	370468.74	중부	5.363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626-52	2019. 08.16	철재
		126° 51' 15.59227" E	Y	186854.63					
296	5358	35° 55' 37.70573" N	X	369970.09	중부	4.202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186	2019. 08.16	철재
		126° 51' 15.50036" E	Y	186851.58					
297	5360	35° 55' 44.82496" N	X	370189.93	중부	4.355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164	2019. 08.16	철재
		126° 51' 04.52800" E	Y	186576.86					
298	5417	35° 54' 19.50595" N	X	367602.03	중부	4.34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48	2019. 08.19	철재
		126° 39' 52.34982" E	Y	169717.70					
299	5420	35° 54' 03.25318" N	X	367101.10	중부	4.02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48	2019. 08.19	철재
		126° 39' 52.33520" E	Y	169715.62					
300	5423	35° 54' 00.79242" N	X	367026.26	중부	2.81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43	2019. 08.19	철재
		126° 39' 40.75451" E	Y	169424.95					
301	5434	35° 54' 17.35213" N	X	367537.65	중부	3.45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36	2019. 08.19	철재
		126° 39' 29.34415" E	Y	169140.59					
302	5438	35° 54' 11.32622" N	X	367350.93	중부	3.69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43	2019. 08.19	철재
		126° 39' 40.72905" E	Y	169425.44					
303	5720	35° 56' 05.78935" N	X	370834.30	중부	5.228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242	2019. 08.19	철재
		126° 51' 53.65773" E	Y	187809.33					
304	5732	35° 55' 20.82277" N	X	369448.92	중부	4.454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669	2019. 08.16	철재
		126° 51' 37.73569" E	Y	187408.25					
305	5741	35° 55' 49.15017" N	X	370321.82	중부	5.511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20-26	2019. 08.20	철재
		126° 51' 43.18654" E	Y	187546.13					

306	5748	35° 53' 52.28565" N	X	366760.09	중부	3.575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89	2019. 08.19	철재
		126° 40' 27.36595" E	Y	170592.95					
307	5751	35° 54' 05.31048" N	X	367162.09	중부	3.67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79	2019. 08.19	철재
		126° 40' 20.70721" E	Y	170427.31					
308	5755	35° 54' 20.74264" N	X	367639.16	중부	4.19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76	2019. 08.19	철재
		126° 40' 03.89850" E	Y	170007.42					
309	5759	35° 54' 10.09840" N	X	367311.09	중부	4.01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78	2019. 08.19	철재
		126° 40' 03.83354" E	Y	170004.68					
310	5761	35° 53' 57.17267" N	X	366912.71	중부	3.20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83	2019. 08.19	철재
		126° 40' 03.78138" E	Y	170002.02					
311	5772	35° 56' 03.51110" N	X	370764.31	중부	5.752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242	2019. 08.20	철재
		126° 51' 46.88623" E	Y	187639.50					
312	5774	35° 55' 55.09200" N	X	370504.58	중부	4.613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257	2019. 08.16	철재
		126° 51' 53.95357" E	Y	187816.29					
313	5776	35° 55' 42.28642" N	X	370110.33	중부	5.489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012	2019. 08.20	철재
		126° 51' 41.43287" E	Y	187501.87					
314	5779	35° 55' 35.40127" N	X	369898.18	중부	5.467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012	2019. 08.16	철재
		126° 51' 39.65494" E	Y	187457.00					
315	5781	35° 55' 26.87334" N	X	369635.10	중부	4.147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286	2019. 08.20	철재
		126° 51' 46.41329" E	Y	187626.06					
316	5790	35° 56' 30.77058" N	X	371695.79	중부	6.084	군산시 비응도동 72	2019. 08.12	철재
		126° 32' 05.77195" E	Y	158037.28					
317	5807	35° 56' 08.88251" N	X	371025.42	중부	7.198	군산시 비응도동 119	2019. 08.12	철재
		126° 31' 30.46164" E	Y	157148.98					
318	5813	35° 56' 30.73993" N	X	371696.90	중부	6.718	군산시 비응도동 40	2019. 08.12	철재
		126° 31' 48.61172" E	Y	157607.17					
319	5818	35° 56' 24.42756" N	X	371502.73	중부	6.175	군산시 비응도동 40	2019. 08.12	철재
		126° 31' 45.40606" E	Y	157525.89					
320	5829	35° 56' 23.59448" N	X	371475.08	중부	5.828	군산시 비응도동 40	2019. 08.12	철재
		126° 32' 01.85632" E	Y	157938.08					
321	5840	35° 56' 30.32886" N	X	371683.18	중부	6.599	군산시 비응도동 42	2019. 08.12	철재
		126° 31' 57.36847" E	Y	157826.59					
322	5842	35° 56' 28.84305" N	X	371637.99	중부	6.779	군산시 비응도동 42	2019. 08.12	철재
		126° 31' 52.34525" E	Y	157700.47					
323	5853	35° 56' 30.66499" N	X	371693.03	중부	6.045	군산시 비응도동 48	2019. 08.12	철재
		126° 32' 01.58533" E	Y	157932.33					
324	5867	35° 56' 19.34360" N	X	371347.19	중부	7.121	군산시 비응도동 81	2019. 08.12	철재
		126° 31' 35.89381" E	Y	157286.71					
325	5876	35° 56' 17.73820" N	X	371297.39	중부	6.461	군산시 비응도동 81	2019. 08.12	철재
		126° 31' 38.50354" E	Y	157351.88					
326	5877	35° 56' 13.66954" N	X	371172.41	중부	6.905	군산시 비응도동 81	2019. 08.12	철재
		126° 31' 35.01373" E	Y	157263.80					

327	5878	35° 56' 17.63965" N	X	371292.49	중부	4.640	군산시 비응도동 96	2019. 08.12	철재
		126° 31' 53.87537" E	Y	157737.16					
328	50104	35° 58' 41.12261" N	X	375675.30	중부	3.708	군산시 소룡동 1665-1	2019. 08.12	철재
		126° 38' 03.90018" E	Y	167028.48					
329	50105	35° 58' 41.59194" N	X	375690.69	중부	4.962	군산시 소룡동 1668	2019. 08.13	철재
		126° 37' 54.11485" E	Y	166783.38					
330	50106	35° 58' 35.83981" N	X	375513.92	중부	4.473	군산시 소룡동 1665-6	2019. 08.13	철재
		126° 37' 48.51795" E	Y	166642.50					
331	50108	35° 58' 34.40586" N	X	375470.40	중부	3.955	군산시 소룡동 39	2019. 08.13	철재
		126° 37' 41.47745" E	Y	166465.94					
332	50113	35° 58' 06.90132" N	X	374622.44	중부	4.396	군산시 소룡동 17	2019. 08.13	철재
		126° 37' 43.65181" E	Y	166517.19					
333	50172	35° 58' 25.29425" N	X	375168.08	중부	14.954	군산시 나운동 872	2019. 08.14	철재
		126° 41' 49.34769" E	Y	172674.99					
334	50480	35° 53' 55.35373" N	X	366851.46	중부	4.93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67	2019. 08.19	철재
		126° 41' 06.14688" E	Y	171565.80					
335	50484	35° 53' 42.68833" N	X	366463.23	중부	5.03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산168-4	2019. 08.19	철재
		126° 40' 40.05706" E	Y	170910.24					
336	50487	35° 53' 48.34053" N	X	366638.01	중부	5.74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03-20	2019. 08.19	철재
		126° 40' 33.17527" E	Y	170738.24					
337	50525	35° 57' 22.19989" N	X	373231.84	중부	5.233	군산시 산북동 385-16	2019. 08.13	철재
		126° 40' 05.66379" E	Y	170070.69					
338	50718	35° 56' 05.12966" N	X	370830.26	중부	9.574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21	2019. 08.19	철재
		126° 46' 07.25721" E	Y	179126.38					
339	50726	35° 56' 05.79317" N	X	370850.86	중부	7.006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812	2019. 08.19	철재
		126° 46' 04.62552" E	Y	179060.46					
340	50809	35° 55' 43.41842" N	X	370144.01	중부	5.063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7-36	2019. 08.20	철재
		126° 52' 16.57250" E	Y	188382.80					
341	50811	35° 55' 31.55052" N	X	369778.71	중부	4.046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359-4	2019. 08.20	철재
		126° 52' 02.11817" E	Y	188019.96					
342	50815	35° 55' 45.94356" N	X	370222.06	중부	5.521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20-26	2019. 08.19	철재
		126° 52' 10.13643" E	Y	188221.57					
343	50841	35° 55' 53.31752" N	X	370462.85	중부	4.951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742	2019. 08.19	철재
		126° 47' 05.43919" E	Y	180583.98					
344	50844	35° 55' 36.05375" N	X	369930.30	중부	4.046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745	2019. 08.19	철재
		126° 47' 13.82589" E	Y	180793.05					
345	50852	35° 55' 19.98557" N	X	369433.91	중부	4.080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412	2019. 08.19	철재
		126° 47' 35.00189" E	Y	181322.85					
346	50860	35° 54' 40.59230" N	X	368218.77	중부	4.485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57-23	2019. 08.14	철재
		126° 47' 53.54196" E	Y	181785.15					
347	50864	35° 54' 45.51734" N	X	368369.77	중부	4.475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57-23	2019. 08.14	철재
		126° 48' 09.14901" E	Y	182176.78					

348	50868	35° 55' 03.95311" N	X	368938.43	중부	4.287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439	2019. 08.14	철재
		126° 48' 00.52624" E	Y	181961.74					
349	50878	35° 55' 09.05964" N	X	369096.18	중부	4.002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429	2019. 08.16	철재
		126° 47' 53.47572" E	Y	181785.30					
350	50881	35° 54' 51.55352" N	X	368556.65	중부	3.776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670	2019. 08.14	철재
		126° 47' 52.75662" E	Y	181766.16					
351	50886	35° 55' 54.17144" N	X	370475.32	중부	5.209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370	2019. 08.19	철재
		126° 52' 20.16698" E	Y	188473.34					
352	51026	35° 53' 46.72958" N	X	366570.42	중부	3.067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1599	2019. 08.20	철재
		126° 44' 33.61854" E	Y	176767.98					
353	51027	35° 54' 01.66347" N	X	367028.68	중부	3.433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1626	2019. 08.20	철재
		126° 45' 04.70701" E	Y	177548.80					
354	51055	35° 55' 25.76345" N	X	369615.14	중부	5.470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727	2019. 08.19	철재
		126° 46' 37.84348" E	Y	179890.29					
355	51058	35° 54' 58.21317" N	X	368768.46	중부	4.917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1775	2019. 08.19	철재
		126° 45' 55.99495" E	Y	178839.13					
356	51063	35° 55' 12.06347" N	X	369195.69	중부	14.669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426-2	2019. 08.19	철재
		126° 45' 50.30540" E	Y	178697.51					
357	51074	35° 54' 39.82713" N	X	368204.89	중부	6.346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794-15	2019. 08.20	철재
		126° 45' 05.57442" E	Y	177573.54					
358	51075	35° 54' 26.57717" N	X	367796.39	중부	5.905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1754	2019. 08.20	철재
		126° 45' 07.45417" E	Y	177619.64					
359	51104	35° 54' 36.57116" N	X	368125.92	중부	5.04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639	2019. 08.19	철재
		126° 40' 16.90937" E	Y	170335.32					
360	51109	35° 55' 10.25271" N	X	369166.42	중부	9.21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753-4	2019. 08.19	철재
		126° 39' 49.01329" E	Y	169639.43					
361	51196	35° 53' 46.62712" N	X	366569.71	중부	3.843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836	2019. 08.21	철재
		126° 43' 57.25177" E	Y	175855.96					
362	51197	35° 53' 51.93370" N	X	366732.62	중부	4.120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840	2019. 08.20	철재
		126° 44' 06.79933" E	Y	176095.84					
363	51198	35° 54' 03.41374" N	X	367085.84	중부	3.963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855	2019. 08.20	철재
		126° 44' 15.80397" E	Y	176322.60					
364	51201	35° 54' 23.71337" N	X	367711.52	중부	4.741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778	2019. 08.20	철재
		126° 44' 15.52260" E	Y	176317.23					
365	51203	35° 54' 36.21118" N	X	368096.75	중부	4.067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866	2019. 08.20	철재
		126° 44' 15.14943" E	Y	176308.91					
366	51214	35° 58' 26.88327" N	X	375228.91	중부	8.848	군산시 소룡동 383	2019. 08.13	철재
		126° 39' 26.42326" E	Y	169094.35					
367	51257	35° 53' 51.68805" N	X	366725.70	중부	3.927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836	2019. 08.21	철재
		126° 43' 57.14403" E	Y	175853.68					
368	51261	35° 53' 48.23619" N	X	366615.35	중부	2.552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1624	2019. 08.20	철재
		126° 44' 56.64565" E	Y	177345.58					

군산시 공고 제2019 - 203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90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구암동 167-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90호)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11월 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구암동 167-3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구암동 잠두2길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소로3-490 : L=180m, B=4m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24, 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 예정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구암동	602	도로	10,961	202	국(건설교통부)	국			
2	구암동	167-3	전	155	9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3	구암동	167-4	전	46	24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4	구암동	167-6	전	23	2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5	구암동	171-6	전	17	17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6	구암동	172-5	전	446	29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군산시 공고 제2019 - 20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 계고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및 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자진철거 기 한 : 2019. 11. 29.
3. 공고기간 : 2019. 11. 15. ~ 2019. 11. 29.(15일간)
4. 자진철거 대 상 자 :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무단설치(물건) 소유자(관계자)
5. 자진철거 위 치 :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886-9번지
6. 자진이동 대상(수량) : 물건 1건 [노점시설]
7. 집 행 일 : 공고기간 이후 행정대집행 실시
8. 공고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및 전국구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9. 관련법규 : 하천법 제33조, 하천법 제69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행정
 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10. 공시송달 및 계고내용 :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계고명령 및 행정
 대집행 예고통보」
11. 기타사항 : 2019. 11. 29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의거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아울러, 처분(자진이동 명령)에 내용에 불복이 있을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산시장에게 행정심판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계고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물건조서

번호	종 류	수 량	비 고
1	노점시설	1	

2019. 11. 08.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9-20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규정에 의한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을 위해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군 산 시 장



- 1. 제 목 : 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보
공시송달 공고
- 2.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연번	성명	주 소	위반내용	통보사항	방문일자 (등기발송일자)	미송달사유
1	(주)디아 이이엠 이엔지 임*용	전북 군산시 산단로 134-6 (소룡동)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36번지 공장에 폐기물 불법투기	행정대집행 영장	2019.11.07. (2019.11.07.)	폐문부재 (이사감)

- 4. 공고기간 : 2019. 11. 12. ~ 2019. 11. 25.(14일간)
- 5. 문 의 처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063-454-3473)

6. 공고사항

귀하의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36번지에 위치한 공장에 불법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처리 조치명령)규정에 따라 조치명령 하였고 2018년 5월 30일 군산시 자원순환과-12453(2018.5.30.)호로 귀하에게 군산시 소룡동 1636번지 공장에 불법야적 및 장기 방치중인 폐기물을 2018년 8월 30일까지 처리토록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연장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 장기 적치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9년 10월 31일까지 반드시 불법 야적된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를 이행하기를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됨을 영장 통보하며,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